

의안번호	2201230
의 퇴 인	김윤 의원
회 답 일	2024.08.19.
추 계 번호	23C4865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,2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6,000만원(연평균 3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(안 제8조의2 신설)	32	32	32	32	32	160	32

주: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 신설 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)	-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업무조정위원회”)를 둠(제1항) 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함(제2항) -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-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·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-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-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-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- 제7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-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3항) -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됨(제5항) -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	의무규정

		명 이상 2.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.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○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6항)	
--	--	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 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2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,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20명,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에서 10명,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,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최소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민간위원은 최소 40

명이 해당됨

- 40명의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¹⁾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²⁾
 - 이는 안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것이며, 안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라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

□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억 6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위원 수(A)	40	40	40	40	40	-	-
1회 참석수당(B)	0.2	0.2	0.2	0.2	0.2	-	-
연간 회의개최 횟수(C)	4	4	4	4	4	-	-
합계(A×B×C)	32	32	32	32	32	160	32

주: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- 1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- 2) 참고로,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과거 1년간(2022년 7월~2023년 6월) 1회의 회의를 개최함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